

「평창군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농축산과장)

- 농촌인구의 지속감소·고령화,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어업·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·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농어촌지역개발을 촉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
- 정부나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시책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어업·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전액 국비 또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 추가 지원하거나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마련하였고
- 경쟁력 제고, 농촌지역 개발, 자립기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농업현실 여건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·농촌 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시책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

- 어떤 특정 사안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반적·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명문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- 일부 한정된 계층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규모 농가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업 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부